

## 2024년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5조에 따라 ‘2024년 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2일

신 안 군 의 회 의 장



### 1. 신청대상

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

### 2.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

-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홀수달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)
- 명예퇴직 예정일 : 신청한 다음 짹수달 말일

※ 「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준수

### 3. 신청절차

-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‘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’ 와 ‘명예퇴직원’ 을 각각 자필로 의회사무과장을 경유하여 신안군의회 의장(이하 의장)에게 제출

### 4. 대상결정

#### ○ 대상자의 심사결정

-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재직기간과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

## ○ 제외 대상자

-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,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
-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
-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(임기제공무원은 제외)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(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)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-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

## 5. 수당지급

- **지급방법** :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
- **지급인원** : 예산범위 내
- **지급액**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정기준
1.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	퇴직당시(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월봉급액의 반액×정년잔여월수
2.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	정년잔여월수-60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×[60+————] 2
3. 10년 초과인 사람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(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
## 비고

1.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2.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「지방공무원법」 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.
3.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(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표에서 “부칙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,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.
  - 가.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.
  - 나.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(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)의 78퍼센트[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(상당) 공무원은 84퍼센트]의 68.54퍼센트[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(상당) 공무원은 67.5퍼센트]를 적용한다.

## 6. 행정사항

- 의회사무과장은 명예퇴직신청자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「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」와 「명예퇴직원」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및 「신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」을 참고하거나 의회사무과(061-241-5014)로 문의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

(앞쪽)

\*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"✓"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 · 제8조에 따름
------	-----	---

신청인 기재란	(1) 소속		(3) 공무원 구분	[ ] 일반직 [ ] 특정직( )	(4) 직급 · 계급 · 직무군 (호봉)					
	(2) 전(前) 소속 (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)				(6) 주민등록번호		(7) 주소 □□□-□□□			
	(5) 성명 <table border="1"><tr><td>한글</td></tr><tr><td>한자</td></tr></table>		한글	한자	(8) 전화번호(지택)		(9) 근속기간 년 월		(10) 정년일	
	한글									
	한자									
(11) 비위 · 형벌 사항 [ ] 있음 [ ] 없음										
소속 기관 기재란	(12) 정년 구분 [ ] 연령정년 [ ] 계급정년		(13) 정년		세(년)					
	(14)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		[ ] 임기제	년	월	확인	인사담당관 (인)			
	(15) 정년잔여기간 (수당지급대상 기간)		년	개월	(16)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					
	(17) 비위 · 형벌 사항 확인 [ ] 있음 [ ] 없음		확인	인사담당관 (인)	연금담당관 (인)	감사담당관 (인)				

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  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- 첨부서류
-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. 다만,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  - 명예퇴직원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(표준안)」 별지 제2호서식) 1부
  - 경력증명서 1부(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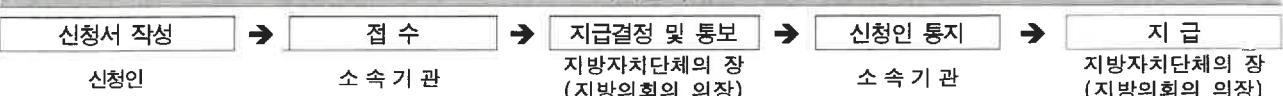
의회사무과장

직인

신안군의회 의장 귀하

- 비고:
-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,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 · 연금 · 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.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처리절차



#### 작성방법

1.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.
2. ③란은 해당란([ ])에 "✓"표시를 하고, 특정직공무원(소방·교육 공무원 등)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( )에 적습니다.  
\*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,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.
3. ④란을 적을 때에는,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(계급)·직무군(전문경력관의 경우)·호봉을 적습니다.
4. ⑨란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,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5.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"✓"표시를 하고,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,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.
6. ⑫ ~ ⑯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·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(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).
7. ⑯란은 해당란에 "✓"표시를 합니다.
8. ⑯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"세" 또는 "년"으로 적습니다.
9. ⑯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.
10.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·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해 되("✓" 표시),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## 명예퇴직원

1. 소속:

2. 직위:

3. 직급·계급:

4. 성명:

명예퇴직 사유:

※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,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, 직위, 시기(기간) 등을 명시합니다.

명예퇴직 신청일:

명예퇴직 희망일:

※ 명예퇴직 희망일은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.

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([ ]정기 · [ ]수시)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신안군의회 의장 귀하